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2514 판결 [보증채무금]

참 조 조 문

[1] 민법 제105조, 제429조

재 판 경 과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2514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나5440 판결

전 문

【원고,상고인】 손AA

【피고,피상고인】 김BA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3. 10. 10. 선고 2003나54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남영화약이라는 상호로 화약류판매업을 하던 원고가 주식회사 CA건설(이하 'CA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천공·발파 작업현장에서 소요되는 화약을 공급하기로 하고 화약주문서의 계약자란에 CA건설의 기명날인을 받으면서 당시 CA건설로부터 화약장약작업을 수급한 피고에게 화약주문서의 보증인란에 기명날인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는 남영화약의 직원인 최DA으로부터 남영화약에서 CA건설에게 화약을 공급하기 위하여는 화약주문서의 보증인란에 현장 작업자가 기명날인을 하여야 작업현장에서 화약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화약주문서의 보증인란에 기명날인하였고, 당시 최DA은 보증인란에 기명날인하여도 어떤 문제가 없겠느냐는 피고의 질문에 대하여 지금까지 남영화약이 보증인이나 보증사로부터 화약대금을 받은 일은 없었다고 답변한 사실, 피고가 화약주문서의 보증인란에 기명날인할 당시 화약주문서 1항 주문내역에는 각종 화약류의 품명, 규격, 수량, 단가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공급기간이나 화약대금의 액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또 기재된 수량도 실제 공급량이 아니라 단가를 정하기 위한 최소단위의 수량이었으며, 화약주문서 3항에는 대금 보증에 관하여 '보증보험증권 납입 혹은 원청업체 연대보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화약주문서 보증인란에 기명날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CA건설의 화약대금채무에 관한 보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는 화약이라는 물품의 특수성에 비추어 화약주문자가 건설용으로만 사용한다는 것을 화약장약업체가 보증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궁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남영화약이라는 상호로 화약류판매업을 하던 원고는 CA건설에게 CA건설의 이 사건 천공·발파 작업현장에서 소요되는 화약을 공급하기로 하고 화약주문서 계약자란에 CA건설의 기명날인을 받으면서 당시 CA건설로부터 화약장약작업을 수급한 피고에게 화약주문서 보증인란에 기명날인을 요구한 사실, 화약주문서는 1항 주문내역, 2항 대금결제조건, 3항 대금 결제보증, 4항 운반, 5항 운반비, 6항 현장내용의 기재사항 또는 기재란이 있고, 그 아래 왼쪽에는 공급받는 자인 계약자의 주소, 상호 등의 기재란이 있으며, 그 오른쪽에는 보증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기재란이 있는 사실, 이 사건 화약주문서는 물건의 매수인이 작성하는 통상의 물품주문서와는 달리 화약의 공급자인 원고가 미리 작성한 양식을 화약공급을 요청한 CA건설에게 교부하여 CA건설과 2인의 보증인의 기명날인을 받은 사실, 피고뿐만 아니라 화약취급과 무관한 골재도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관계로 '화약주문자가 건설용으로만 화약을 사용한다'는 것을 보증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서정원도 이 사건 화약주문서 보증인란에 기명날인한 사실, 피고가 화약주문서 보증인란에 기명날인할 당시 화약주문서 1항 주문내역에 각종 화약류의 품명, 규격, 수량, 단가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공급기간이나 화약대금의 액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화약주문서에 기하여 공급될 화약은 CA건설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 사용될 것임을 피고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공급될 화약의 수량과 종류가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였던 사실, 이 사건 화약 공급에 있어 화약주문서 외에 별도의 공급계약서 등 화약공급과 관련된 서류는 작성되지 않았고, 화약 공급시에는 피고의 피용자인 조EA가 거래명세서에 날인을 하고 이를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화약주문서의 전체적 내용, 피고가 보증인란에 기명날인을 한 동기와 경위, 그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화약대금채무를 보증하려는 의사로 화약주문서 보증인란에 기명날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화약공급이 원고와 피고의 첫 거래로서 피고의 중개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천공·발파 작업의 원청업체가 화약을 공급받은 CA건설이어서 CA건설은 화약주문서의 보증인이 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피고가 보증의 의사로 기명날인하였다는 점은 더욱 명백하여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화약주문서의 보증인란에 기명날인한 피고에게 CA건설의 화약대금채무에 관한 보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화약주문자가 공급받은 화약을 건설용으로만 사용한다는 것을 화약장약업체가 보증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만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처문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 및 보증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